



의안번호	제 2013 - 23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12. 23. (제53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주문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1과 같이,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2와 같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3과 같이,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4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4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희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4. 별지

- 별지1 :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안
- 별지2 :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별지3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 별지4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 약어표 ◆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별지 1]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은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배임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 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 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 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 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 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 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배임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증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1. 배임수재

가.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배임증재

가. 제1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배임수재

가.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중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후 수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중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중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중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로 인하여 학교, 언론사, 감정평가기관, 강제집행기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배임증재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상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수재자가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적극적 증재

- 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

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배임수재범죄와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증재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2]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 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 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 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 제1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 제1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받기로 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
 - 채권을 양수하거나 고용관계 등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는 등으로 법률사무 취급을 적극 주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가.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교제나 청탁·알선을 요구하며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시하여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

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수, 요구, 약속 또는 제3자 공여, 공여 약속을 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

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9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상습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습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체포·감금(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습특수존속체포·감금(폭

처벌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벌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체포·감금(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유기(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형법 제271조 제2항), 중유기(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형법 제271조 제4항),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학대(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제2항), 유기치상·중유기치상·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유기치사·중유기치사·영아유기치사·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존속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청소년 보호법 제5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체포·감금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상습체포·감금 또는 누범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유기 · 학대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 · 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 · 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상습범인 경우(제2유형 중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 학대)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0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체포·감금범죄

가. 일반적 기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상습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습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습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4항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2. 유기 · 학대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 · 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상 · 중유기치상 · 영아유기치상 · 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 · 중존속유기치상 · 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유기치사 · 중유기치사 · 영아유기치사 · 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 · 중존속유기치사 · 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양형인자의 정의]

1. 체포·감금범죄

가.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체포·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체포·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아.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차.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카.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2. 유기·학대범죄

가.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파출소·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체포·감금범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 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 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유기 · 학대범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4]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I.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1. 성판매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성매매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성판매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발적 폐업(2유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Ⅱ.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1.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대가 편취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성판매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 - 6년	4년 - 8년	6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성매매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 - 6년	4년 - 8년	6년 - 10년

- ▷ 성매수 유인·권유·강요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발적 폐업(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판매 강요

(1) 제1유형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함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나. 성매매 알선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나. 성판매강요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판매 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판매 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판매 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다. 성매매알선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판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장소 제공/제공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알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알선 약속 및 제공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판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3)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장소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알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마.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사.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인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대상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성판매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행위에 이른 경우 또는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성매수 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